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8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04. 17

3. 정정사유

- Ae, C-P, C-Pe, Cp(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 제1호[주식-파생형] →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투자한도 추가 등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VaR 및 위험등급(2 → 1등급) 변동, 재무정보 확정)

4. 정정요구 · 명령관련 여부: 아니요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신탁 명칭	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추 가)	④이 투자신탁의 Cp(퇴직연금)클래스 및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으로 Cp(퇴직연금)클래스 및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 매수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계좌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를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를 말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__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__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가 법령·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추 가)	2. Ae 클래스 수익증권 11. C-P 클래스 수익증권 12. C-Pe 클래스 수익증권 13. C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14. Cpe(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추 가) ④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A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2. A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On-Line)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C-P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2. C-Pe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13. C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14. Cpe(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④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A클래스, Ae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 가)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8항 제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A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Ae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8항 제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8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6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__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삭 제) ②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____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____금액으로 한다. 2. A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5 11. C-P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8.9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5 12. C-P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4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5 13. C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6.9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5 14. Cpe(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4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5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__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__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 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저축약관” (S-P클래스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저축약관”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다.(펀드명칭 변경(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 제1호[주식-파생형] → 삼성KOSPI200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클래스 신설 및 투자한도 추가 등)